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498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고민정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6. 25.
3. 회부연월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군 복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립지원 대상자 등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 부재, 가정 내 갈등·학대 등 사유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된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면서도, 동일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자 면제 규정이 없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해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제5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대상에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353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생략) ②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1. ~ 5. (생략) <신설>	법률 제21353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1. ~ 5. (생략) 5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6. (생 략) ③ · ④ (생 략)	고시하는 사람 6. (생 략) ③ · ④ (생 략)
-------------------------	------------------------------------

2. 검토의견

가.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도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하고, 이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대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0년 도입되었음.

2026년 학자금대출 금리는 연 1.7%이며,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이 발생하여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일정한 상환율을 적용하여 의무상환액을 산정함.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도는 군복무 중이거나 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채무자 등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제도임.

현행법상 이자면제 대상은 크게 군복무자, 경제적·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채무자 및 의무상환 유예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¹⁾. 구체

적으로 군복무자에는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이 포함되고, 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채무자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의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 및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 등이 포함됨. 아울러 2026년 11월 20일부터는 비수도권 대학 재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사람까지 이자면제 대상이 확대될 예정임.

□ 이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이자면제는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이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등의 학자금 상환

-
-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개정 2013. 6. 4., 2019. 12. 31., 2021. 6. 8.>
1.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 ②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신설 2021. 6. 8., 2023. 12. 26., 2025. 11. 11., 2026. 2. 19., 2026. 5. 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4.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5.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대출시점이 2015년 이전인 채무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제3조제2호가목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및 제3조제2호나목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대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대출시점이 2015년 이전인 채무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③ 삭제 <2026. 2. 19.>
- ④ 채무자가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자립지원 대상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거나 보호가 종료된 아동·청년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대학 입학 예정자·재학생인 보호아동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 보호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해당되며, 2026년 6월 기준 자립지원 대상자 209명에 대하여 약 50만원의 이자가 면제되었음.

「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자립지원 대상자’는 학자금대출자가 아래 내용에 해당하여 대출시점에 보호아동 또는 자립준비청년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구분	세부구분	연령기준	정의
보호 아동 ¹⁾	연장아동	~만 17세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
	만기퇴소	만 18세 이상	-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등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
자립 준비 청년 ²⁾	연장종료		- 만 18세가 되어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년 - 보호기간 연장이 종료된 청년

1) 보호아동 :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보호(연장)아동

2) 자립준비청년: 만 18세 이후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 '23-1학기~'26-1학기 고시에 따라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약정한 생활비대출의 경우 해당 약정을 따름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2조의3(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

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 현행 법령상 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보호체계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경우, 학대를 받는 경우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아동양육 시설·공동생활가정 또는 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음.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통해 보호 및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음.

두 집단은 적용되는 법률과 보호체계에는 차이가 있으나, 원가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 별도의 보호와 자립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사함. 특히 9세 이상 18세 미만은 「아동복지법」상 아동과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의 연령범위가 중복되어,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호받는 경우 ‘보호대상아동’, 성평등가족부 소관 시설에서 보호받는 경우 ‘가정 밖 청소년’으로 구분³⁾될 수 있음.

< 아동과 청소년의 구분 >

구분	법령상 연령	담당부처	보호체계	가정외보호 주요 기관
아동	「아동복지법」 18세 미만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체계 (보호대상아동)	-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가정위탁 중 전문위탁가정
청소년	「청소년기본법」 9세 이상 24세 이하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체계 (가정 밖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중 청소년쉼터(중장기), 청소년자립지원관

□ 그런데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2026년 5월부터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된 반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은 이자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⁴⁾.

□ 이에 개정안은 가정 밖 청소년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원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유사한 자립지원 대상자와의 지원 격차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3) ‘가정외보호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체계 진단 및 내실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4) 이러한 지원 격차와 관련하여 2026년 2월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한 가정 밖 청소년과의 토크콘서트에서도 이러한 지원 격차가 문제로 제기되었고, 성평등가족부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성평등가족부, 가정 밖 청소년 보호·자립 지원 강화 논의 (26.2.4.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 참고로, 개정안은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이자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자금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국가장학금 지급 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적용하고 있는 자립지원수당 지급기준⁵⁾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자면제 대상을 정할 계획임.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5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인원인 401명을 기준으로 추가 재정소요를 연간 약 4,7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 규모를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가정 밖 청소년 이자면제 대상 및 예산 (자료 : 교육부) >

- | |
|---|
| ▲(대상) '25년 기준 자립지원수당 대상자 401명
▲(예산 소요액) 47백만원
- 401명 × 6.9백만원(1인당 평균 대출잔액)×1.7%(대출금리) |
|---|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이자면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93

5) 청소년 쉼터, 자립지원관에서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